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5. 3. 11.>

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25일
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	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	

산 지 소유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전용대상 산지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	
				계	임업용 산 지	공익용 산 지	준보전 산 지

부산물 생산현황	벌채 수종 및 수량			굴취 수종 및 수량			토석		
	수종	본수	재적	수종	본수	재적	계	석재	토사
		본	㎥		본	㎥	㎥	㎥	㎥

전용목적		전용기간	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사 유

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
국립수목원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
국립산림과학원장,
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

첨부서류	1.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) 또는 3)에 해당하는 서류 1부(신고인이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신고서	→	접수	→	현지 조사	→	추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 복구비 산정	→	추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	→	추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	→	신고 수리 결정	→	신고 수리
신고인						처리기관: 제출기관				신고인		처리기관: 제출기관		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